

서울특별시 시민청(市民廳)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033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5. 9. 8.

발 의 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서울갤러리(현행 시민청)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상 행정재산으로, 행정재산 사용료에 해당하는 서울갤러리 대관료의 감면 사유는 상위법령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.
- 따라서, 상위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대관료의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위법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자 함.

2. 수정주요내용

가. 서울갤러리 대관료 감면 규정 삭제(안 제10조).

서울특별시 시민청(市民廳)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시민청(市民廳)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3항 중 “제13조”를 “제12조”로 한다.

안 제10조를 삭제하고, 안 제11조부터 안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제4조(이용료) ① · ② (생 략)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전시, 공연, 행사 등의 성격·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<u>제13조</u> 에 따른 서울 갤러리운영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다.	제4조(이용료) ① · ② (원안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<u>제12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<u>제10조(대관료 감면) 시장은 서울 특별시가 후원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</u>	<u><삭 제></u>
<u>제11조 ~ 제19조 (생 략)</u>	<u>제10조 ~ 제18조</u> (원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와 같음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시민청(市民廳)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민청(市民廳)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갤러리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도모하고, 일반인이 서울갤러리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서울갤러리”란 도시홍보, 시민 참여와 소통, 문화체험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청사에 설치한 복합문화시설을 말한다.
2. “대관”이란 서울갤러리 내 각 공간의 사용을 허가받아 전시, 공연, 행사 등을 진행하는 행위를 말한다.
3. “대관자”란 제8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.

제3조(개관 및 휴관) 서울갤러리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.

1. 1월 1일

2. 설

3. 추석

4.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

제4조(이용료) ① 서울갤러리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시장이 자체적으로 기획하거나 대관자가 개최하는 특정 전시, 공연, 행사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전시, 공연, 행사 등의 성격·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서울갤러리운영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다.

제5조(무료이용)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국빈·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
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3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
4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

자 1명

5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6. 7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
7. 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(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)
8.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
9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
10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
11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12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13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14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15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16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

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
17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18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

19.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

20.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

21.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기
· 장기복무 제대군인

22. 그 밖에 시장이 서울갤러리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무료이용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이용의 금지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금지한다.

1.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,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

2. 그 밖에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7조(행위의 제한) 시장은 이용자가 서울갤러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.

1. 흡연,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
2. 고성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

제8조(대관허가) ① 시장은 서울갤러리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 홍보, 시민 참여와 소통, 문화체험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, 공연, 행사 등을 위하여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.

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.

1. 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대관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
2.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9조(대관료) ① 대관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 전날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대관료는 시설 사용료와 냉·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. 이 경우 냉·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도시가스요금 또는 전기요금에 따라서 산출한다.

③ 대관료의 징수·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

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10조(대관자의 준수사항)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서울갤러리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제11조(손해배상 및 변상조치) ① 이용자가 서울갤러리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, 대관의 경우에는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 대관자가 책임을 진다.
② 대관자는 대관 기간에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서울갤러리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

제12조(서울갤러리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서울갤러리 정책의 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
2. 서울갤러리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서울갤러리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3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·운영하고, 위원의 임기는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
되,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
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도시홍보, 시민 참여와 소통, 문화체험 등을 위한 전시, 공연, 행사 등과
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2.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

3. 서울갤러리 소관 담당 국장

4. 그 밖에 시장이 서울갤러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,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
괄한다.

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
해촉할 수 있다.

1. 본인이 원하는 때

2. 질병,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

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위원회 업
무 소관부서의 담당 사무관이 맡는다.

⑦ 위원회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서
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제14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제15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6조(운영·관리의 위탁) ① 시장은 서울갤러리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서울갤러리의 운영·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이용시간, 휴관일, 대관, 이용료 및 편의시설 설치·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 서울갤러리의 운영·관리를 위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사항은 이 조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의 규정을 따른다.

제17조(편의시설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서울갤러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갤러리 내부에 편의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하여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